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14
----------	-------

발의연월일 : 2025. 8. 18.

발 의 자 : 김성원 · 박충권 · 구자근
김태호 · 고동진 · 정동만
이헌승 · 배준영 · 이인선
김선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한미군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주한미군 재배치 이후 평택시뿐만 아니라 장기 미반환 공여 구역을 보유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기지 이전과 재배치 과정에서 병력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 붕괴, 인구유출, 생활환경 악화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음.

특히, 미군의 이전 후에도 광범위한 공여지가 장기간 반환되지 않음으로써 해당 지역들은 개발제한과 산업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 해체와 인구소멸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

한 특별법」의 제명을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 및 장기미반환공여 구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평택시등에 한정된 지원 범위를 동두천시 및 의정부시 등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며,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반환·개발 촉진 대책을 병행함으로써 장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안보 기반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신설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 및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이전되는 평택시 등”을 “이전되는 평택시 등과 계획 대비 15년이상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으로, “이전지역 주민의”를 “이전지역 및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주민의”로 한다.

제2조에 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에 반하여 15년이상 반환되지 아니하고 있는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2조제1항 중 “평택시등의 장은”을 “평택시등의 장 및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제34조 중 “평택시등의 재정결함을”을 “평택시등 및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결함을”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택시등 및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射倖行爲)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금액의 사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방자치단체의 법안적용 준용)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4조부터 제31조까지의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을 준용하여 지원하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중 “2026년”을 “203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한미군지 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 부터의이전예관한협정 및 대한 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 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 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 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 미군의 기지가 <u>이전되는 평택 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 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 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u><신설></u>	<u>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 및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u> 제1조(목적) ----- ----- ----- ----- ----- ----- ----- ----- ----- ----- -----이전되는 평택 시 등과 계획 대비 15년이상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이전지역 및 장기미반환공 여구역 주민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0. (현행과 같음) 11. “<u>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 재한 지방자치단체</u>”란 대한민 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

제32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평택시등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체육시설·공원·도로 및 방음시설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4조(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여구역의 제공으로 인한 평택시등의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신설>

리계획에 반하여 15년이상 반환되지 아니하고 있는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2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평택시등의 장 및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평택시등 및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결함을-----
-----.

제34조의2(「관광진흥법」 적용

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택시등 및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射倖行爲)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에서 대통

<u><신 설></u>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② (유효기간) 이 법은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그 효력을 가진다.	<u>령령으로 정한다.</u>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금액의 사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40조(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방자치단체의 법안적용 준용)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4조부터 제31조까지의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을 준용하여 지원하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u>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② (유효기간) -----<u>2035년</u>-----.
--	--